

# 2017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

2017년 제2회 화천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7월 26일

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근거 법령

- 가. 지방공무원법 제27조(신규임용) 및 제32조(시험의 실시)
- 나.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및 제66조(정년)
- 다.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(임용시험의 방법) 및 제46조(시험과목)
- 라. 공무원시험임용령 제7조(시험과목) 및 제27조(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)
- 마. 지방공무원 인사규칙(표준안) 등

## 2. 선발예정인원

직 급	직 렬	직 류	선 발 예정인원	비 고
9급	시설	일반토목	5명	
		건축	3명	

## 3.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

### 가. 시험방법

- 1)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필기시험(과목별 20문제, 4지 택1형) / 60분

구 분	시험과목	비 고
9급(일반토목)	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	
9급(건축)	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	

※ 합격자 결정 : 과목당 4할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성적순에 의거 선발 예정인원 범위내 합격자 결정

- 2)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)

## 나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 고	시험일시	합격자 발표
'17. 7. 26 ~ '17. 8. 9 (2주간)	'17. 8. 7 ~ '17. 8. 9 (3일간)	필기시험	8. 11(금)	8. 26(토)	8. 28(월)
		면접시험	8. 28(월)	8. 31(목)	9. 1(금)

※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화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ihc.go.kr>) 알림마당-고시/공고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시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## 4.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1999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나. 거주지 제한 :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

※ 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

다. 자격제한 : 공무원시험임용령 제27조제1항 관련 “별표8”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(산업기사 이상)

직렬	직류	대상 자격증	
시설	일반 토목	기술사	토질 및 기초, 토목품질시험, 토목구조, 항만 및 해안, 도로 및 공항, 철도, 수자원개발, 상하수도, 농어업토목, 토목시공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지질 및 지반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
		기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, 조경, 지적, 응용지질, 건설안전, 교통, 광해방지
		산업기사	건설재료시험, 콘크리트, 철도토목, 토목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조경, 지적, 건설안전, 교통
	건축	기술사	건축전기설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시험, 건설안전, 소방
		기능장	건축일반시공, 건축목재시공
		기사	건축설비, 건축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
산업기사		건축설비, 건축일반시공, 건축, 건축목공, 방수, 실내건축, 건설안전, 소방설비	

## 라. 응시결격사유 등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거나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.

#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※ 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.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< 지방공무원법 제66조 : 정년 >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2.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 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: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>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**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: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>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- 1. 공공기관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**5. 응시원서 접수(방문접수만 가능)**

- 가. 응시원서 교부 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
- 나. 접수기간 : '17. 8. 7(월) ~ '17. 8. 9(수) / 3일간
- 다. 접수장소 :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(2층)
- 라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(09:00~18:00)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
- 마. 제출서류
  - 1) 응시원서(붙임1 서식) 1부
    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(3.5\*4.5) 2매 부착
    - 응시수수료 : 5,000원 상당 화천군 수입증지 부착(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)
  - 2)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  - 3)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병역사항과 주소이력 전체)
  - 4)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 또는 자격취득 확인서 1부
  - 5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\*\* 4), 5) 항목은 해당자만 제출

**6. 가산점 적용**

**가.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**

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)을 소지한 필기 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
구 분		가산비율		비 고
취업지원 대상자	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	일반토목 직류만 해당
자격증 소지자	통신·정보 처리분야	1%	정보관리기술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	
		0.5%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
	사무관리 분야	1%	컴퓨터활용능력 1급	
		0.5%	워드프로세서(舊1급), 컴퓨터활용능력2급	

- ※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.
- ※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- ※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(舊)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.(舊 워드프로세서 2, 3급은 가점불가)

#### 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)

##### 1) 가산비율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인 건축 직류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(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)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다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1)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(사본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2)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 등으로 송부하고,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3) 필기시험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## 7.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중복접수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라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.
- 마.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- 바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합니다.
- 사.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,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.

아.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, 4년(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)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안전행정자치과 행정담당(033-440-2238)으로 문의 바람, 공고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www.ihc.go.kr>) 공고/고시란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


(뒷 면)

## 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2.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3. 응시원서는 아래의 **작성요령**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# 《작성요령》

- ① 주 소 :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
- ② 학 력 :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대학원 졸업·재학·수료·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
- ③ 성 명 : 정자로 기재(3군데)
- ④ 주민등록번호 : 정자로 기재
- ⑤ 「※」 표시란 :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⑥ 화천군 수입 증지란에는 5,000원 상당의 화천군 수입증지를 부착